



2024학년 살레시오성미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

전화: 02) 849-7306

이메일: salesiosungmi@naver.com

홈페이지: <http://www.smi.or.kr>

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살레시오성미유치원에서는
2024학년도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신입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. 유치원 현황

가. 학급수 : 9학급

나. 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93 살레시오성미유치원(7호선 신풍역)

2. 채용 인원 : 부담임 1명

3. 근무 조건

가. 급여: 국가호봉, 명절수당, 기타 수당, 사학연금, 건강보험 가입 등

나. 근무 시간: 1일 8시간 주 5일 근무

4. 지원 자격

가. 자격

- 1) 유아교육과 졸업자(2024년 2월 취득예정자 지원 가능)
- 2)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- 3) 기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나. 지원 자격 제한 :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(붙임3 확인)

-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- 2)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- 3) 아동청소년보호법 제5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4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
5. 전형방법 및 일정

가. 1차 서류전형

나. 2차 면접 및 수업시연

다. 최종 결과

※ 전형결과 및 일정은 개별 안내

6. 제출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제출일	비고
지원자 공통	가.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(본원소정양식) ☞ 자기소개서는 자필로 작성 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다. 교원자격증 사본 라. 대학 및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 마. 성적증명서 바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것) 사. 자격,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사본가능/해당자) 아. 지도교수 추천서(졸업예정자에 한함) 자. 교적사본(가톨릭 신자에 한함)	서류접수 기간	▶ 지원서서식 첨부파일로 탑재

7. 서류 접수

가. 기간: 2023. 12. 8.(금) ~ 채용 시까지

나. 방법: e-mail 접수 (salesiosungmi@naver.com)

8. 유의사항

가. 지원서의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나. 지원자는 서류 제출 전 응모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라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자(원감)에게 02-849-7306 + (내선 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서 작성 요령

1.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
2.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
3. 지원서는 아래의 <작성 요령>을 참고하여 작성

<작성 요령>

- 1) 접수번호: 기재하지 말 것(*원서 접수 시 원에서 부여함)
- 2) 성 명: 정자(正字)로 기재, 한자(漢字)도 기재
- 3) 사 진: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(* 크기: 반명함 사진)
- 4) 생년월일: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. 나이는 만 나이
- 5) 현 주 소: 연락 가능한 주소, 신 우편번호(5자리) 기재
- 6) 연 락 처: 연락이 되는 e-mail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
- 7) 학 력: 고등학교부터 기재
- 8) 경력사항: 최근 경력부터 먼저 기재
- 9) 자 격: 교원자격증을 포함한 자격 기재

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

- * 정해진 양식 없이 A4용지에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(2매 이내)
- 자기소개, 지원동기, 교사로서의 포부 및 교육관 등을 자유롭게 기수
- 글씨 크기 11, 줄 간격 160%, 글씨체 함초롬바탕체

 자기소개서는 자필로 작성

20 년 월 일
작성자 :

붙임3) 채용 응모 자격 제한 관련 법령
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4., 2018. 10. 16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2)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27.>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[본조신설 2012. 1. 26.]

3) 아동청소년법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 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 명령"이라 한다)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1., 2016. 1. 19., 2016. 5. 29., 2018. 1. 16., 2018. 3. 13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

4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